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267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5. 1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하려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 실시에 따라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유효기간 명시 (제21조의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나. 수입 검사대상기기를 검사대상으로의 추가 (제31조의6 , 제31조의7, 제31조의9)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를 제조검사 대상에 추가하여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검사의 종류를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로 함

다.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조항 및 업무권한자 추가 (제31조의13)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검사면제조항을 신설(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하고 업무권한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추가

라. 검사신청에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를 추가 등 (제31조의14
내지 제31조의16)

제조검사(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개별신청과 동시신청 규정에 수입 검사
대상기기를 추가

마. 설치검사 등의 신청에 제조국의 증명 규정 삭제 (제31조의17, 제31조의25)

설치검사신청 및 설치신고기기(설치검사면제기기)의 신고시 수입되는 기기에 대한
제조국가의 제조검사 증명서류 삭제(공단의 제조검사 증명 서류로 대체)

바. 검사에 필요한 조치 추가 (제31조의22)

검사시 필요한 조치를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함

사.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지정시 확인사항중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삭제 (제31조의29)

관리대행기관 신청서 중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삭제하고 기술
인력명세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및 학력 삭제

아.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 (제34조)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소요되는 일수(日數)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을 함

3. 의견제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13-2동) 에너지수요관리과
- 전자우편 : pak4433@motie.go.kr
- 팩스 : 044-203-538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유효기간) 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 밖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의6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7 중 “제4항”을 “제4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9 중 “법 제39조제8항”을 “법 제39조제8항 또는 제39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의12제1항 중 “제2항”을 “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13제1항 중 “법 제39조제6항”을 “법 제39조제6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제3호”으로, 제2항 중 “시·도지사”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제3항 중 “시·도지사”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입 검사대상기기에 한함) 또는 시·도지사”로, 제4항 중 “시·도지사”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입 검사대상기기에 한함) 또는 시·도지사”로, 제5항 중 “시·

도지사”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제6항 중 “시·도지사”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제7항 중 “시·도지사”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제조검사를 면제한다.

제31조의14제1항 중 “제8항”을 “제8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의15제1항 중 “제8항”을 “제8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의16 중 “제8항”을 “제8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의17의 제2항제1호 중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에 갈음하는 검사를 받았음을 제조국가의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제조검사에 관한 증명서류”를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제31조의22제1항 중 “제4항”을 “제4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의25제2항 중 “(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에 갈음하는 검사를 받았음을 제조국가의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제조검사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를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

도면 각 1부)”로 한다

제31조의29제4항 중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제4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단 또는 해당 진단기관에 내야한다”를 “법 제67조제4호에 따른 검사수수료는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소요되는 일수(日數)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공단 또는 해당 진단기관에 내야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 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신 설></u></p> | <p><u>제21조의2(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유효기간)</u> ① <u>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u></p> <p>② <u>그 밖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p> |
| <p>제31조의6(검사대상기기) <u>법 제39조제1항</u>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u>별표 3의3</u>과 같다.</p> | <p>제31조의6(검사대상기기) <u>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u>----- -----.</p> |
| <p>제31조의7(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u>법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u>에 따른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u>별표 3의4</u>와 같다.</p> | <p>제31조의7(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 - <u>제4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u>----- -----.</p> |
| <p>제31조의9(검사기준) <u>법 제39조제8항</u>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p> | <p>제31조의9(검사기준) <u>법 제39조제8항 또는 제39조의2제4항</u>--- ----- ----- ----- -----.</p> |

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1조의12(검사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제품 등 검사대상 기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1조의13(검사의 면제) ① 법 제39조제6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되어 검사가 면제되는 제조업자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공단이나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조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해당 검사를 면제받은 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

-----.

제31조의12(검사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① -----제2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13(검사의 면제) ① 법 제39조제6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제3호-----
-----.

1. ~ 5. (현행과 같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③ -----

터 15일 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해당 요건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가입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사용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 4. (생략)

⑤ 공단의 이사장(이하 "공단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수입 검사대상기기에 한함) 또는 시·도지사-----
-----.

④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수입 검사대상기기에 한함) 또는 시·도지사-----.

1. ~ 4. (현행과 같음)

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1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6항에 따라 면제한 검사를 다시 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명 등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⑧ (생략)

<신설>

제31조의14(용접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1조의15(구조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구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구조검사신청서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

⑧ (현행과 같음)

⑨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에 대한 제조검사를 면제한다.

제31조의14(용접검사신청) ① --
----- 제8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15(구조검사신청) ① --
----- 제8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

를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1조의16(용접검사 및 구조검사
의 동시신청) 법 제39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
의 용접검사와 구조검사를 동시
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검사대상기기 용접(구
조)검사신청서에 제31조의14제
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와 제31
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
부하여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
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15제2항에 따른
서류는 구조검사를 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의17(설치검사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
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
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16(용접검사 및 구조검사
의 동시신청) -----
-- 제8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
및 제4항-----

-----.

제31조의17(설치검사신청) ① (현
행과 같음)

② -----

-----.

1. -----

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에 갈음하는 검사를 받았음을 제조국가의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제조검사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2. (생략)

제31조의22(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① 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에게 그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 8. (생략)

② ~ ④ (생략)

제31조의25(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① (생략)

② 설치신고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이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2.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2(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① -----

----- 제4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5(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대상
기기 설치신고서에 검사대상기
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 또는 제31조의21제8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
상기기는 수입면장 사본 및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조검사에
같은하는 검사를 받았음을 제조
국가의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제
조검사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각 1부, 제31조의13제1항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
체검사기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31조의29(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
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9(검사대상기기 관리대
행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생략)

제34조(수수료)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공단 또는 해당 진단기관에 내야 한다

<신설>

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현행과 같음)

제34조(수수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7조제4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소요되는 일수(日數) 및 인력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기술료 등 각종 경비로 구성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공단 또는 해당 진단기관에 내야 한다.

(별지)

현행

<별지 제11호 서식>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6 관련-

| | | | | | |
|---|--|-----------------------------|-----------------------|--------|-------------|
| 검사대상기기 | | <input type="checkbox"/> 용접 | 검사신청서 | | |
| | | <input type="checkbox"/> 구조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 |
| | 사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신청내용 | 검사대상 기기명 | 형식 | | | |
| | 용량 | 최고사용압력 | MPa | | |
| | 검사 요청일 | 원자재 검사 성적서번호 | | | |
| | 최초 신청일 | 검사증번호 |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input type="checkbox"/> 용접 <input type="checkbox"/> 구조)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기관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1. 용접검사 가. 용접 부위도 1부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다. 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2. 구조검사: 용접검사는 1부, 다만, 용접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기기는 설계도면 2부를 첨부하고,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는 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용접검사 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용접검사 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수수료: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 | |
| 처리 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검사 | 결과 | 검사증 작성 및 발급 |
| 신청인 | 공인검사기관 | 공인검사기관 | 공인검사기관 | 공인검사기관 | 공인검사기관 |

개정안

<별지 제11호 서식>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6 관련-

| | | | | | |
|---|--|-----------------------------|--|--------|-------------|
| 검사대상기기 | | <input type="checkbox"/> 용접 | 검사신청서 | | |
| | | <input type="checkbox"/> 구조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 |
| | 사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신청내용 | 검사대상 기기명 | 형식 | | | |
| | 용량 | 최고사용압력 | MPa | | |
| | 검사 요청일 | 원자재 검사 성적서번호 | | | |
| | 최초 신청일 | 검사증번호 |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제8항, 제39조의2제1항·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14부터 제31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input type="checkbox"/> 용접 <input type="checkbox"/> 구조)검사를 신청합니다. | | | | | |
| 년 월 일 |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 기관장 귀하 | | | | | |
| 첨부서류 | 1. 용접검사 가. 용접 부위도 1부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다. 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2. 구조검사: 용접검사는 1부, 다만, 용접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기기는 설계도면 2부를 첨부하고,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는 제1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검사대상기기의 규격이 이미 용접검사 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기기의 규격과 같은 경우에는 용접검사 또는 구조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3년간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수수료: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수인 검사대상기기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 | | |
| 처리 절차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검사 | 결과 | 검사증 작성 및 발급 |
| 신청인 | 공인검사기관 | 공인검사기관 | 공인검사기관 | 공인검사기관 | 공인검사기관 |

<별지 제12호

서식-제31조의17관련>

| | | | | |
|--|---|------------------------------------|--|--|
| 검사대상기기 | | <input type="checkbox"/> 설비검사 | 신청서 | |
| | | <input type="checkbox"/> 개조검사 | | |
| | | <input type="checkbox"/> 설치장소 변경검사 | | |
| | | <input type="checkbox"/> 재사용검사 | | |
| | | <input type="checkbox"/> 개속사용검사 | | |
| | | <input type="checkbox"/> 검사연기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
| | 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사업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기기명 | 제조자명 | | |
| | 설치장소 | 검사증번호 | | |
| | 형식 | 용량 | | |
| | 최고사용압력 | 버너종류 | | |
| 검사대상 기기종류 | 성명 | 생년월일 | | |
| | 자격종류 | 자격증번호 | | |
| 시공업자 | 상호 또는 명칭 | 등록번호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개조 또는 장소변경 내용 | | | | |
| 검사 요청일 | 년 월 일 | 연기사유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17부터 제31조의20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input type="checkbox"/> 설치검사 <input type="checkbox"/> 개조검사 <input type="checkbox"/> 설치장소 변경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사용검사 <input type="checkbox"/> 개속사용검사 <input type="checkbox"/>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다만, 검사연기신청은 제외합니다) | |
| 시정사실 첨부서류 | 검사명 | 첨부서류 | | |
| | 설치명 | | | |
| 설치 검사 | 1.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와 및 구조검사를 각 1부 또는 제31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서 1부(수인용 검사대상기기는 수인명장 신분 및 별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3호 규정을 참조)를 첨부하고, 용접검사, 구조검사,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격증사기(등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2. 생략. | | | |

<별지 제12호

서식-제31조의17관련>

| | | | | |
|--|---|------------------------------------|--|--|
| 검사대상기기 | | <input type="checkbox"/> 설비검사 | 신청서 | |
| | | <input type="checkbox"/> 개조검사 | | |
| | | <input type="checkbox"/> 설치장소 변경검사 | | |
| | | <input type="checkbox"/> 재사용검사 | | |
| | | <input type="checkbox"/> 개속사용검사 | | |
| | | <input type="checkbox"/> 검사연기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 | 대표자성명 | (전화번호) | | |
| | 사무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 | 사업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기기명 | 제조자명 | | |
| | 설치장소 | 검사증번호 | | |
| | 형식 | 용량 | | |
| | 최고사용압력 | 버너종류 | | |
| 검사대상 기기종류 | 성명 | 생년월일 | | |
| | 자격종류 | 자격증번호 | | |
| 시공업자 | 상호 또는 명칭 | 등록번호 |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개조 또는 장소변경 내용 | | | | |
| 검사 요청일 | 년 월 일 | 연기사유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17부터 제31조의20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input type="checkbox"/> 설치검사 <input type="checkbox"/> 개조검사 <input type="checkbox"/> 설치장소 변경검사 <input type="checkbox"/> 재사용검사 <input type="checkbox"/> 개속사용검사 <input type="checkbox"/> 검사연기)를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 | |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다만, 검사연기신청은 제외합니다) | |
| 시정사실 첨부서류 | 검사명 | 첨부서류 | | |
| | 설치명 | | | |
| 설치 검사 | 1.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와 및 구조검사를 각 1부 또는 제31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서 1부(수인용 검사대상기기는 수인명장 신분 및 별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제3호 규정을 참조)를 첨부하고, 용접검사, 구조검사,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격증사기(등록 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2. 생략. | | | |

현 행

<별지 13호 서식 -제31조의25관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7.29.>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 일 |
| 신고인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설치신고 기기 | 기기명 | 제조자명 |
| | 설치일자 | 구조검사종번호 |
| 조종자 (담당자) | 형식 | 전열면적 |
| | 최고사용압력 | 버너종류 |
| 시공 업자 | 상호 또는 명칭 | 등록번호 |
| | 소재지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9조제 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1 조의 25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 신고 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 | |
|---|-----------|
| 검사대상기기의 용량검사종 및 구조검사종 각 1부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31 조의 25제 1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의 경우에는 수입확인서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9조제 1항에 따른 구조검사종 제출하는 검사용 필압을 제조국가의 검사기관이 인정한 구조검사종 관련 증명서류 사본 각 1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31조의 13 제 1항에 따라 구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 검사기록 사본 열계도면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개 정 안

<별지 13호 서식 -제31조의25관련>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7.29.> 한국에너지공단 전자민원(www.energy.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설치신고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7 일 |
| 신고인 | 상호 또는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설치신고 기기 | 기기명 | 제조자명 |
| | 설치일자 | 구조검사종번호 |
| 조종자 (담당자) | 형식 | 전열면적 |
| | 최고사용압력 | 버너종류 |
| 시공 업자 | 상호 또는 명칭 | 등록번호 |
| | 소재지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9조제 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1 조의 25제 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설치 신고 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귀하

| | |
|--|-----------|
| 검사대상기기의 용량검사종 및 구조검사종 각 1부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31 조의 25제 1항에 따른 확인서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의 경우에는 수입확인서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9조제 1항에 따른 구조검사종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 31조의 13제 1항에 따라 구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 검사기록 사본 열계도면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현 행

<별지 제26호 서식 - 제31조의29관련>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 지정 [] 변경지정 신청서

(1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 상호 또는 명칭 |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변경내 dung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9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 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 |
|-----------|---------------------------------------|-----|
| 신청인 |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각 1부 | 수수료 |
| 첨부서류 | 2. 향후 1년 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 없음 |
| 신청통상자원부장관 |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확인사불 |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

발정정보 공표이용 동의서

본인은 마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안전장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 사항 중 재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개 정 안

<별지 제26호 서식 - 제31조의29관련>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 지정 [] 변경지정 신청서

(1쪽)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성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 상호 또는 명칭 | |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변경내 dung | |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9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 [] 지정 []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 | | |
|-----------|---------------------------------------|-----|
| 신청인 |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명세서 각 1부 | 수수료 |
| 첨부서류 | 2. 향후 1년 간의 안전관리대행 사업계획서 | 없음 |
| 신청통상자원부장관 |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확인사불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결재 → 지정서

신청인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별지 제26호 서식 3쪽 - 제31조의29관련>

기술인력명세서

(3쪽)

| 일련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 학력 | 자격구분 | 자격번호 | 자격종류 | 발급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26호 서식 3쪽 - 제31조의29관련>

기술인력명세서

(3쪽)

| 일련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구분 | 자격번호 | 자격종류 | 발급연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